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현저한 차이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 민원처리절차에 대한
조례 주관부서 검토 의견

□ **관련 사무의 주체(업무분장)**

○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현저한 차이에 대한 신고서 및 그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접수 사무**

- 검토 의견: 관할 수도사업소장이 접수 사무의 주체

- 1) 현재 하수도사용료 감면의 근거가 되는 조례는 우리 부서가 조례 주관부서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이하 ‘조례’로 명칭한다.)인데,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34조제1항제4호에서는 ‘사용한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제21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어 신고한 경우’ 그 차이량에 대하여 (하수도사용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2) 위의 조례 제34조제1항제4호에서는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가 언급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상황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3) 그런데 조례의 해당 조항에서는 신고의 주체만이 언급되어 있을 뿐, 신고서 접수주체가 언급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나,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단서조항에서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때의 신고 중 상수도사용 및 지하수의 계속사용으로 인한 경우에는 관할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장(이하 “수도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신고서 접수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고, 조례 제39조제2항제6호의 사무위임 규정에서도 ‘수도사업소장이 부과·징수하는 사용료 등에 대한 제34조에 따른 감면’ 사무에 대해서는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조례 제34조제2항에서는 ‘조례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감면

신청서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때’의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신고에 대한 신고서의 접수 업무와 그에 따른 감면신청서 접수 업무의 주체가 관할 수도사업소장이라는 점은 현행 조례 및 시행규칙의 규정 상 논란의 여지없이 명확하다고 할 것임

- 조례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근거조항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수배출량 등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위를 하거나 상황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중략>
4.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신고)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업종변경에 한함)에 따른 신고 중 상수도사용 및 지하수의 계속사용으로 인한 경우에는 관할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장(이하 "수도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중략>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때의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9조(사무의 위임) ②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중략>
6. 수도사업소장이 부과·징수하는 사용료 등에 대한 제34조에 따른 감면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중략>
4. 제빙업·빙과류제조업·청량음료제조업·주류제조업·시멘트가공업 또는 철도역 등에 사용한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제21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어 신고한 경우 : 그 차이량에 대하여 면제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에 대한 신고서 및 그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 접수 시, 신고된 하수배출량에 대한 적절 여부 판단 및 감면 인정 사무의 주체

- 검토 의견: 관할 수도사업소장이 하수배출량 인정, 소급 인정기간은 30일
- 1)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현저한 차이’에 따른 신고와 그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 하수배출량의 인정 사무는 조례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9조(사무의 위임)
②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중략>
2. 제24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

- 2) 또한 그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에 대한 인정 사무 역시 조례 제39조제2항제6호에 따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9조(사무의 위임)
②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중략>
6. 수도사업소장이 부과·징수하는 사용료 등에 대한 제34조에 따른 감면

- 3) 조례 제21조제1항 본문에서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그 상황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 인정도 배출량 차이에 대한 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30일 이전까지의 배출량에 대해서 소급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수배출량 등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위를 하거나 상황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중략>
4.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 **관할 수도사업소장이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 대한 신고서 상의 신고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조사 사무의 주체**

- 검토 의견: 관할 구청장이 직접 조사 사무의 주체

- 1)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현행 조례 및 시행규칙의 규정 상,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신고서 제출 및 그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제출에 대한 접수 사무의 주체가 관할 수도사업소장임은 명확하다 하겠으나, 관할 수도사업소장이 신고량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직접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조사 사무의 주체에 대해서 관할 수도사업소와 관할 자치구 간의 논란이 있으므로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2)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현행 조례 제39조제2항제6호의 규정 상 ‘수도사업소장이 부과·징수하는 사용료 등에 대한 (조례) 제34조에 따른 감면’ 업무는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사무가 위임되어 있고, 같은 조 같은 항의 제2조에서도 ‘제24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에 대해서는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있으므로,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의 신고 및 그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에 대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은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업무분장 상의 논란이 불필요하다 하겠음
- 3) 현행 조례 제24조제3호에서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하수배출 신고량이 별도의 조사 없이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도사업소장은 그 신고서 상의 하수배출 신고량을 그대로 하수배출량으로 인정하여 그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접수에 대한 감면조치를 시행하면 될 것임
- 4) 다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관할 수도사업소장이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신고한 신고서상의 하수배출 신고량을 별도의 조사 없이도 그대로

하수배출량으로 인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그 경우 관할 수도사업소장이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신고한 신고서상의 하수배출 신고량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25조제1항에 근거하여 실제로 배출되는 하수량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바, 그 경우 조사 업무의 주체를 두고 관할 수도사업소와 관할 자치구 간에 사무분장 상의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5)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 제39조제1항에서 '(조례) 제25조에 따른 배출량 등의 조사 및 조사결과의 처리 사무에 대해서는 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사무분장 상의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현행 조례 제39조제1항에서는 '제25조에 따른 배출량 등의 조사 및 조사결과의 처리' 사무에 대해 '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청의 어느 부서의 사무인지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재는 관행 상 유출지하수 출수량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해당 사무를 병행하고 있는데, 일부 자치구의 경우 하수도사업부와 지하수업무 담당 부서가 분리되어 있어 그 경우 자치구 내에서도 두 부서 간 해당 사무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논란은 일단 조례에서 '제25조에 따른 배출량 등의 조사 및 조사결과의 처리' 사무에 대해 명확히 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논란은 해당 자치구에서 두 부서 간의 내부 협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됨)

- 조례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근거조항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하수배출량의 인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중략>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9조(사무의 위임)
②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중략>
2. 제24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24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중략>
③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후략>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9조(사무의 위임) ①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중략>
4. 제25조에 따른 배출량 등의 조사 및 조사결과의 처리

□ 소결(관련 사무의 처리절차)

○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의 신고

-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황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신고함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수배출량 등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위를 하거나 상황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중략>
4.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신고)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업종변경에 한함)에 따른 신고 중 상수도사용 및 지하수의 계속사용으로 인한 경우에는 관할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장(이하 "수도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중략>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의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는 주류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 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나는 사용자의 경우에 한한다.

○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에 해당되어 그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

- 하수도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공공하수도 사용자)가 감면신청서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함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4. 제빙업·빙과류제조업·청량음료제조업·주류제조업·시멘트가공업 또는 철도역 등에 사용한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제21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어 신고한 경우 : 그 차이량에 대하여 면제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5조(감면 신청)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9조(사무의 위임) <중략>
②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6. 수도사업소장이 부과·징수하는 사용료 등에 대한 제34조에 따른 감면

※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서는 ‘구청장 또는 수도사업소장을 관리기관장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상 수도사업소장이 부과·징수하는 사용료 등에 대한 제34조에 따른 감면 사무는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특히 앞서 검토하였듯이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서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현저한 차이’에 따른 신고서 접수 사무의 주체가 관할 수도사업소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그에 따른 감면신청서 접수자인 ‘관리기관장’은 구청장이 아닌 관할 수도사업소장을 의미한다고 판단됨

○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의 현저한 차이’에 대한 신고서와 그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의 접수

- 관할 수도사업소장이 접수함

○ 신고서 상의 (하수배출)신고량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1차 판단

- 조례 제39조제2항제2조에 따라 관할 수도사업소장이 1차적으로 판단함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9조(사무의 위임)
②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중략>
2. 제24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

○ **관할 수도사업소장이,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신고한 하수배출량이 적절하다고 1차 판단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 관할 수도사업소장은 조례 제24조제3호에 따라, 신고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보고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이량에 대해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한다.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하수배출량의 인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중략>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신고)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업종변경에 한함)에 따른 신고 중 상수도사용 및 지하수의 계속사용으로 인한 경우에는 관할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장(이하 "수도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는 주류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 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나는 사용자의 경우에 한한다.

○ **관할 수도사업소장이 신고서 상의 (하수배출)신고량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1차 판단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 관할 수도사업소장이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구청의 지하수 출수량 조사 담당부서(앞서 살펴보았듯이 하수도사업부서와 지하수 담당부서가 다른 경우, 구청 내부의 사무분장 협의에 따라 하수도사업부서로 변경 가능)로 공문 시행 등을 통해 신고된 건에 대한 하수배출량 직접 조사 의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24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하수배출량의 직접조사 및 조사결과의 처리

- 구청 지하수 출수량 조사 담당부서(또는 하수도사업부서)의 담당직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배출되는 하수량을 직접 조사함
- 직접조사는 계측기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계측기 설치 시 현장에 입회하여 계측기의 이상 유무(공인검정기관의 검정 여부, 검정유효기간 도과 여부, 파손 또는 고장 여부 등)를 확인하고 설치 후 봉인 처리함
- 직접조사를 시행한 구청 담당자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계측기 설치 사실 또는 배출하수량 직접조사 결과(계측기 미설치의 경우)를 공문으로 통지함

○ 하수배출량 및 하수도사용료 감면량의 조정

- 관할 수도사업소장은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직접 조사한 하수의 양이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직접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음(그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감면 인정량도 당연히 함께 조정됨)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24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 하수배출량 확정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 처리

- 관할 수도사업소장은 직접조사결과를 기준하여 최종 조정한 하수배출량이 물의 사용량과 30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이량에 대하여 하수도사용료를 감면 처리함(차이량이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료 감면 미적용)

작성자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2133-3780 하수과장팀장: 엄기숙 ☎3815 담당: 박성권 ☎3816